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93

제출일자 : 2010년 12월 10일
제출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에 직접사용 하는 4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를 도시계획세만을 면제하도록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 감면범위 축소에 따른 조정
-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자동차관리법」의 화물자동차와 「지방세법」 의 화물자동차 규정 불일치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감면 조례 신설

3. 주요내용

-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관리법」에 따라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 하는 4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만을 면제하도록 개정
-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과,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 2010. 1. 27 ~ 2. 16, 결과 : 의견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공동주택의 부대 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 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중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 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며,

제28조제2항 중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를 “제116조의21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5조의2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생 략)</p>	<p>2. (현행과 같음)</p>
<p>3. (생 략)</p> <p>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p>	<p>3. (현행과 같음)</p> <p>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p>

현 행	개 정 안
<p>를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p> <p>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생 략)</p> <p>3. (생 략)</p> <p><u><신 설></u></p>	<p>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p> <p>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하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u>제15조의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u></p>

현 행	개 정 안
	<p><u>과세특례)</u>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u>2006년 1월 1일부터</u>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u>2005년 12월 31일</u>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며, <u>2005년 12월 31일</u>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 세는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2010년 12월 31일까지</u>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p>
<p>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u>사업소세</u>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u>-----</u> <u>-----</u> <u>-----</u> <u>-----</u> <u>-----</u> <u>-----</u> <u>주민세</u> <u>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u> <u>-----</u> <u>-----</u> <u>-----</u>.</p>
<p>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p>	<p>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u>-----</u></p>

현 행	개 정 안
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u>사업소세</u> 를 면제한다.	----- ----- ----- ----- ----- ----- ----- ----- <u>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u> -----.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대구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u>사업소세</u> 를 면제한다.	----- ----- ----- ----- ----- ----- ----- ----- <u>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 원분을</u> -----.
제2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① (생략)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 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u>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u>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설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생 략)	----- ----- ----- ----- ----- ----- ----- ----- <u>제116조의21제1항</u> ----- ----- ----- ----- ----- ----- ----- <u>③ (현행과 같음)</u>